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0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 한정애·송옥주·문진석

이병진 • 한병도 • 박홍배

서영교 · 박홍근 · 이건태

임오경 · 소병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, 「민사소송법」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,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. 그 결과 지연 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41조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법정이율(法定利率)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"을 "법정이율 (法定利率)과 독촉절차,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"으로 한다.

제7장(제41조부터 제4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

- 제41조(신속한 재판의 신청)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의 진 행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99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파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제21조에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 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
- 제42조(재판지연의 보상 청구) ① 제41조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

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한다.
- 제43조(보상의 결정) ① 제42조에 따라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,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절차,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계속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특례의 범위) 이 법은 제1	제2조(특례의 범위)
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	
법정이율(法定利率)과 독촉절차	법정이율(法定利率)과 독촉절
<u>및 형사소송</u> 에 관한 특례를 규	차,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
정한다.	
<u><신 설></u>	제7장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
	<u>특례</u>
<u> <신 설></u>	제41조(신속한 재판의 신청) 법원
	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는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
	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할 수
	<u>있다.</u>
	1.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「민사
	소송법」 제199조에서 정하는
	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
	<u>아니하는 경우</u>
	2.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제21조
	에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
	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
	3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
	<u>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제42조(재판지연의 보상 청구) ①

<신 설>

제41조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 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 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 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 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한 다.

제43조(보상의 결정) ① 제42조에 따라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,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절차,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.